3 • 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3 • 15의거법 시행령)



[시행 2023. 9. 26.] [대통령령 제33738호, 2023. 9. 26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 (사회통합지원과) 044-205-3270

- 제1조(목적) 이 영은「3・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진상규명 신청 등) ① 3·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령」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(이하 "진실화해위원회"라 한다),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는 해당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.
- **제3조(진상규명 신청 기간)** 제2조제1항에 따른 3·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해야 한다. <개정 2023. 9. 26.>
- 제4조(재신청)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제21조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.
- 제5조(3·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) 진실화해위원회는 「3·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 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- **제6조(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)**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법 제3조에 따른 진상 규명을 위하여 장소 제공, 인력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.
- 제7조(공동 업무 수행)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.
 - 1.3 15의거 진상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
 - 2.3 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사실 조사
 -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제8조(재정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1.3 15의거 기념행사의 거행
 - 2.3 15의거 기념시설의 건립
 - 3. 3 15의거에 관한 교육 학술 활동 지원
 - 4. 그 밖에 3 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

부칙 <제33738호,2023. 9. 26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